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0가합544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다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솔잎

변론 종결2022. 3. 22.

판결 선고2022.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증여계약 목록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체결된 같은 목록 '계약내용'란 기재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2,457,7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과 1989. 10.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로 소외 C(D생), E(F생)을 두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7. 11. 3.경 B과 사이에 "B 소유의 인천 서구 G건물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15억 원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주고,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이혼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을 하고,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고려하여 B이 피고에게 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8. 1. 9.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B은 2009. 11.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L'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마. B은 2017. 12. 15.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9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20. 주식회사 M로부터 위 매매대금 29억 원 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 1,362,705,110원을 공제한 1,537,294,89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M에 양도하였다.

바. B은 2017. 12. 25. 피고 명의의 N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5,000만 원을, 2018. 1. 2. 피고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2018. 1. 8. 위 O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2. 27. 위 O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사.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B에게 2018.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11,105,0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35,996,290원이다(이하 세금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경기광주	양도소득세	2017	2017. 12. 31.	2018. 5. 31.	211,105,050원	257,970,240원
경기광주	양도소득세	2017	2017. 12. 31.	2018. 6. 30.	207,583,000원	251,175,360원
서인천	부가가치세	2017 2기	2017. 12. 20.1) B 운영의 사업체 폐업일	2018. 3. 31.	182,063,280원	226,850,690원
합계		600,751,330원	735,996,2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P은행, O 주식회사, N증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7. 12. 25. 기준 B의 적극재산은 620,293,571원, 소극재산은 600,751,330원으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 B이 보유한 순자산은 19,542,241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B은 피고에게 합계 462,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피고가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B의 순자산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인 442,457,759원(= B이 증여한 돈의 합계액 462,000,000원 - B이 보유한 순자산 19,542,2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735,996,290원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각 양도소득세 채권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중 2017. 12. 25.자 송금 이후인 2017. 12. 31.에 성립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7. 12. 15. 체결되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2.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3항). B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2017. 12.

20.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전인 2017. 12. 20. 이미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참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은 2017. 11.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15억 원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한 사실, 피고와 B은 2017. 11. 3. 서울가정법원 2017호협3623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8. 1. 9.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위 협의이혼신고에 근접한 2017. 12. 25.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피고와 B의 2018. 1. 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B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 피고와 B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 3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P은행, O 주식회사, N증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B은 당초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고에게 15억 원을 분할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B와 피고는 약 3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B은 혼인기간 중인 2009. 8.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활동을 계속하였고, 피고는 두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2003년경 캐나다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주로 자녀 양육에 전념하였다.

③ B은 위 재산분할약정 이후 주식회사 M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9억 원에 매도하여 2017. 12. 20.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1,537,294,890원을 수령하였다.

④ B은 2017. 12. 20. 위 매매대금 1,537,294,890원을 수령한 직후부터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2017. 12. 25. 이전까지 7억 3,000만 원과 49,290,769원을 대체거래 방식으로 출금하였고, Q에게 1억 150만 원, R에게 8,600만 원, S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해주는 등 합계 1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처분하였다.

⑤ B은 자신이 2017. 12. 20.부터 2017. 12. 25.까지 처분한 10억 원의 절반 정도의 금액인 4억 6,200만 원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주었다.

⑥ 채납자 재산조회 결과로 파악되는 부동산, 주식, 차량, 금융자산 등의 재산 이외에 B이 협의이혼 당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태환

판사조대현

판사김희주

별지

1) B 운영의 사업체 폐업일